



민원 질의응답·답변원문



사례

설계변경시 보험료 정산항목 금액 변경

2023-03-30

답변

1.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(신청번호 000-00000-00000000)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2. 귀하의 민원내용은 "보험료 사후정산"에 관한 것으로 이해(또는 판단) 됩니다.

3.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'3-가'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1)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(다만,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)
- 2)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. 다만,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
- 3) 입찰참가자는 "2)"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(산출내역서 포함)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. (다만,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

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)

4)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

또한 동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'12-나'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·감될 경우 그 증·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귀 질의가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확인하여 정산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가능하며,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00(☎000-000-0000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<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,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.>

2023-07-10

담당부서

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

관련법령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/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/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/

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

정부합동민원상담:110(무료)(24시간365일,수어상담09~18시)

시스템이용문의:1600-8172(유료), 070-4140-1458(유료)(09~18시)

COPYRIGHT(c)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.